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##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수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8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31일

3. 제안이유

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이 타 조례에 명시된 우대내용과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5조)

- 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.

나. 기타 조문 수정(안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현행 조례의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중 주차요금관련 조항이 타 조례와 맞지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현행 조례 제5조(우대) 중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하도록<sup>1)</sup> 규정하고 있지만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」 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<sup>2)</sup>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의 혼란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,
- 현행 조례 제5조제2항(도청주차장 이용 관련) 및 제3항(청남대 입장료 관련)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대사항은 안 제5조제2항으로 변경하여 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물의 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는 조항으로 통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---

1) **제5조(우대)**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 <개정 2013. 6. 28> ② **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.** <개정 2013. 6. 28>③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청남대 등 도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 <개정 2013. 6. 28>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28>

2) **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**주차요금을 면제** 한다. <개정 2012. 7. 16> 1. ~ 6. <생략> 7. **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의 차량** 8. ~ 9. <생략> ② ~ ④ <생략>

- 입법예고('18. 8. 14.~'18. 8. 1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현행 조례의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중 주차요금관련 조항이 타 조례와 맞지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